

#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##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1916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9. 23.  
제안자 : 오지훈 의원

### 1. 수정이유

-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목적에서 규정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는 한편, 제6조제2항1호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 ‘의회 동의’를 해석에 따라 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삭제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‘의회 동의’ 대상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조례 목적의 관련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 일부 삭제 (안 제1조)
- 자치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 일부 삭제 (안 제6조제2항제1호)

#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” 을 삭제한다.

안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의회 동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1. <u>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무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의회 동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1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2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